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(서삼석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9223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3. 21.

발의자 : 서삼석 · 장종태 · 허성무

김동아 · 박용갑 · 김영진

윤준병 · 문대림 · 신정훈

이병진 · 박수현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,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, 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,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·어업 분야에서의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,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.

그런데 농촌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, 도농간 소득격차 확대 등 농촌 경제의 여건 악화를 고려할 때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몰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위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(안 제72조제1항, 제88조의5, 제89조의3제1항·제2항, 제105조제1항).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2025년 12월 31일”을 “2030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제88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2025년 12월 31일”을 “2030년 12월 31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”을 “2031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 “2027년 1월 1일”을 “2032년 1월 1일”로 한다.

제89조의3제1항 중 “2025년 12월 31일”을 “2030년 12월 31일”로, “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”을 “2031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2027년 1월 1일”을 “2032년 1월 1일”로 한다.

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“2025년 12월 31일”을 “2030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이전에 조합법인간 합병하는 경우로서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조합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40억원을 말한다)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2]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(이하 이 조에서 “당기순이익과세”라 한다)한다. 다만, 해당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하지 아니한다.	
1. ~ 8. (생략)	1. ~ 8. (현행과 같음)
② ~ ⑥ (생략)	② ~ ⑥ (현행과 같음)
제88조의5(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) 농민·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·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금으로서 1명당 2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과 그 조합원·회원 등이 그 금융기관으로부	제88조의5(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) -----

터 받는 사업 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소득(이하 이 조에서 “배당소득등”이라 한다) 중 <u>2025년 12월 31일까지</u> 받는 배당소득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, 이후 받는 배당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「소득세법」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고, 그 배당소득등은 같은 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.	<u>2030년 12월 31일</u>
1. <u>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</u> 받는 배당소득 등: 100분의 5	<u>2031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</u>
2. <u>2027년 1월 1일</u> 이후 받는 배당소득등: 100분의 9	<u>2032년 1월 1일</u>
제89조의3(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) ① 농민·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·회원 등으로 하는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으로서 가입 당시 19세 이상인 거주자가 가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탁금(1명당 3천만원	제89조의3(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) ① -----

이하의 예탁금만 해당하며, 이 하 “조합등예탁금”이라 한다)에 서 2007년 1월 1일부터 <u>2025년</u> <u>12월 31일까지</u> 발생하는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, <u>2</u> <u>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</u> <u>월 31일까지</u> 발생하는 이자소 득에 대해서는 「소득세법」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며, 그 이자 소득은 「소득세법」 제14조제 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에 합산하지 아니하며, 「지방 세법」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	<u>-----</u>
	<u>-----</u>
	<u>-----</u> <u>2030년</u>
	<u>12월 31일-----</u>
	<u>-----</u> <u>2</u>
	<u>031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</u>
	<u>월 31일-----</u>
	<u>-----</u>
	<u>-----</u>
	<u>-----</u> .
② <u>2027년 1월 1일</u> 이후 조합 등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 득에 대해서는 「소득세법」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,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며, 「지방세법」에 따른 개인지방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 제105조(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 용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	<u>② 2032년 1월 1일-----</u>
	<u>-----</u>
	<u>-----</u> .
	제105조(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 용) ① -----

